

예천군 공고 제 2016-628 호

[**■**] 통행의 금지
[] 차량의 운행 제한 **공고**

「도로법」 제76조제1항·제2항, 제77조제1항·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,

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[**■**] 통행의 금지
[] 차량의 운행 제한 을 공고
합니다.

2016년 08월 16일

예 천 군



도로의 종류	도시계획도로(주간선도로)	노선명	중로 3-1호
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	차량	구간	풍양초등학교앞 삼거리 ~ 면사무소앞 사거리
기간	2016년 08월 16일부터 2016년 09월 13일까지		

☐ 이유

풍양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(도로정비)에 따른 통행금지

☐ 그 밖의 사항

○ 우회도로 지정

- 승용차 : 풍양초등학교 ↔ 풍양면복지회관 ↔ 풍양면사무소 ↔ 면사무소앞 사거리
- 대형차 : 오지삼거리 ↔ 풍양삼거리 ↔ 면사무소앞 사거리

첨부서류: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